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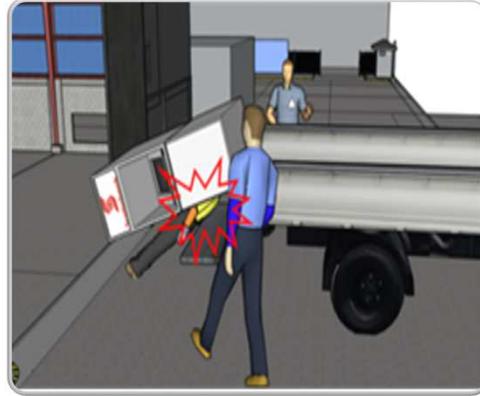


리프트 하역작업 중 깔림



재해개요

2024.01.00(수) 용인시 소재 0000에서 화물자동차 수직리프트로 현금인출기 하역작업을 하던 중 재해자가 깔려 1명이 사망함



발생원인

▶ 깔림 원인

- (출입금지조치) 현금인출기 낙하 또는 전도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출입금지조치 미실시
- (전도방지조치) 현금인출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방지조치 미실시
- (부적합한 하역운반기계) 리프트의 리프팅능력을 초과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실시

예방대책

1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

- 하역중인 화물의 전도 또는 낙하등의 위험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

2 전도방지조치 확인 철저

- 리프트 하역작업 중 제품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방지조치 실시 및 확인

3 적합한 하역운반기계 사용

- 리프팅 능력을 초과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시 적합한 하역운반기계 사용하여 작업실시

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실시
- 중량물을 포함하는 작업 시 '중량물 취급작업' 내용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 작성

※ 본 D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